

[√] 하천점용허가기간 []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장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5일
------	-----	---------

신청인	성명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장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 210-83-02200
	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935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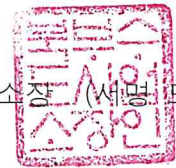
(전화번호 : 02-3146-3343)

허가연월일 및 번호	2019년 5월 8일 서울 제 1554호
점용(행위) 위치	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86-1
점용(행위) 내용	상수도관(D600,D200)정비 및 상수도 맨홀 보수 [점용(행위) 면적: 18㎡]
점용(행위) 기간	2019년 5월 8일 부터 2019년 6월 17일까지(40 일간)
연장기간	2019년 9월 9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(83 일간)
연장사유	정비작업 불가(상수도관 지수불가)에 따른 작업 연기

「하천법」 제33조제1항,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,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([√]하천점용허가기간 []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)의 연장을 신청합니다.

2019년 9월 4일

신청인 북부수도사업소장 (서명 또는 인)



귀하

국토교통부장관, 지방국토관리청장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---

